

##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현재 전열보드는 60335-1과 60335-2-30 난방기기류 규격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30번 개별규격으로는 코드 중간에 자동온도 조절기나 스위치 등을 연결 하는 구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입형 전열보드는 사용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자동온도조절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제품의 특성상 바닥에 매입이 되기 때문에 코드 중간에 조절기나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제품과 함께 조절기나 스위치가 매입 되는 구조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 제품과 함께 조절기나 스위치가 매입되면 오히려 더 소비자의 안전과 편리함에 악영향을 끼칠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예외 조항으로 매입형 전열보드에 한해서 코드 중간에 자동온도 조절기나 스위치류 등을 연결 하는 구조가 허용되도록 규격 제정을 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매입형 전열보드의 전원 코드 중간에 온도조절기를 부착하는 구조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추후에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우: 427-716)

담당자 : 오재철 (02-509-7236)

**Q** 방충에 나온 전기장판, 요, 매트류에대한 콘넥터 공간거리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방충에서도 확실히하셨듯이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었을텐데 애매한 문구만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A** 전기매트는 안전기준(K60335-2-17) 6.분류의 규정에 의하여 2종 구조(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구조)이어야 하므로 전기장판 등에 커넥터의 충전부와 강화절연으로 격리된 부분사이의 연면/공간거리는 안전기준 K60335-1의 29(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절연거리).1항 표13에서 “충전부와 강화절연으로 격리된 다른 금속부와의 사이, 기타충전부인 경우에” 해당되어 8mm이상이어야 합니다.